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) 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지 않을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7조의3(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)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(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.	제167조의3(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	12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	가. ----- -----
1) ~ 3) (생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
4) <u>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</u>	4) <u>아파트(「주택법」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지 않을 것</u>

5) (생략) 나. (생략) 12의2.·13. (생략) ② ~ ⑩ (생략)	5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12의2.·1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12